

현 장 사 진

○ 신길동 54-2 외 신길역사 옆



다중이용시설등조사발의의견

의 안
번 호

56

제안년월일 : 2003. 7. 9

발 의 자 : 박남오의원외 11인

1. 조사의 목적

-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및 다중이용하는 백화점, 병원 등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일제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중이용시설물의 편리성, 안전성을 도모하고
- 인터넷 “구청장에게 바란다” 및 진정서 처리실태 등 민원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조사할 사안의 범위

- 우리구 발주공사 및 다중이용 대형건물(백화점, 병원)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 등
- 인터넷 “구청장에게 바란다” 처리실태
- 진정서 처리실태
-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상의 문제점 등
- 관련 조례 등 법규 검토·정비

3.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

- 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

4. 조사기간

- 2003. 7. 21 ~ 10. 31

다중이용시설등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7. 9

발의자 : 박남오의원외 11인

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구청 발주 건축공사 및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실태와 민원처리실태 등을 심층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제안이유

-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및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, 병원 등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일제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중이용시설물의 편리성, 안전성을 도모하고
- 인터넷 “구청장에게 바란다” 및 진정서 처리실태 등 민원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